

의안번호	2219888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9.
추 계 번호	26F3280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.24%에서 21.24%로 2%p 인상하는 경우, 중앙정부의 수입은 2027년 7.2조원, 2031년 9.0조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0.4조원(연평균 8.1조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단,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중앙정부의 수입이 감소한 만큼 지방정부의 이전 수입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 재정수입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중앙정부 기준, 2027~2031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(안 제4조)	-7.2	-7.6	-8.1	-8.5	-9.0	-40.4	-8.1

주: 단,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중앙정부의 수입감소분만큼 지방정부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 전체 재정수입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교부세의 재원)	○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 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%p 인상 - 지방교부세 법정률(%): (현행) 19.24 → (개정안) 21.24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교부세의 재원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향후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연동되는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은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향후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(2025.10.)¹⁾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 -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에 법정률(19.24%)를 반영하여 산정
 - ※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재원(법정분) = {내국세 - (개별소비세 담배분 × 45%)} 지방교부세 법정률(19.24%)
 - 단, 2030년 이후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증가율은 2029년 증가율 전망치와 동일하다고 가정
 - ※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 증가율 전망('29년 기준): 내국세 5.5%, 개별소비세 담배분 5.5%
- 동 추계시 내국세 등에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반영하지 않음
 -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 등과 연동되는 법정분 외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포함
 - 정부는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2년 이내에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(동법 제5조제3항)
 - 향후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, 동 추계에서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지 않음
-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으나,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
 - 인구감소지역 등의 인구유입 등을 위한 재정수요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경우,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배분만 조정되고 총량에는 변동이 없음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지 않음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: 2025~2029」, 2025.10.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

-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내국세, 종합부동산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
 - 지방교부세는 종류별로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
 - 보통교부세: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고,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
 - 특별교부세: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지원
 - ※ 지역현안수요, 국가지방협력수요, 재난안전수요 등에 활용
 - 부동산교부세: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재원으로 교부
 - 소방안전교부세: 소방·안전시설 확충, 안전관리 강화 등의 재원으로 교부
 - 지방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법정분과 이전년도 예산 및 결산의 차이에 따른 정산분이 있음
 - 지방교부세 법정분은 지방교부세 종류별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등에 법정률(19.24%)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한편,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각각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 담배분에 연동
 -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이전년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으로,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라 발생 이후 2년 이내에 정산되어야함

[표 2] 지방교부세 종류별 재원

지방교부세 종류	재원
보통교부세	{내국세 총액 - (개별소비세 담배분 × 45%)} × 19.24% × 97% + 정산분
특별교부세	{내국세 총액 - (개별소비세 담배분 × 45%)} × 19.24% × 3% + 정산분
부동산교부세	종합부동산세 총액 + 정산분
소방안전교부세	개별소비세 담배분 × 45% + 정산분

-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총액 등에 반영되는 법정률을 2%p 인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
 -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19.24%에서 21.24%로 2%p 인상되어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

※ 지방교부세 법정률(%): (현행) 19.24 → (개정안) 21.24

- 단,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중앙정부의 수입이 감소하지만,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이 동일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수입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

(2) 추계방법

□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 전망치(2025.10.)를 바탕으로 추계

-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(2025.10.) 등에 따르면, 내국세와 개별소비세 담배분은 다음과 같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(2025.10.)에 따르면, 내국세는 2027년 363.0조원에서 2029년 404.4조원으로, 개별소비세 담배분은 2027년 2.2조원에서 2029년 2.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단, 2030년 이후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은 2029년의 전년대비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※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 증가율 전망('29년 기준): 내국세 5.5%, 개별소비세 담배분 5.5%

- 2027~2031년간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 추정치를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적용하면,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2027년 7.2조원, 2031년 9.0조원 등으로 추정

- 지방교부세 법정률(%): (현행) 19.24 → (개정안) 21.24

[표 3]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에 따른 증가분 추정치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
내국세 추정치 ¹⁾ (A, 조원)		363.0	383.5	404.4	426.6	449.9
개별소비세 담배분 추정치 ¹⁾ (B, 조원)		2.2	2.3	2.4	2.5	2.7
내국세 등 추정치(C=A-[B×45%], 조원)		362.1	382.4	403.4	425.4	448.7
법정률	현행(D, %)	19.24	19.24	19.24	19.24	19.24
	개정안(E, %)	21.24	21.24	21.24	21.24	21.24
	차이(F=E-D, %p)	2	2	2	2	2
지방교부세 증가분 추정(C×F, 조원)		7.2	7.6	8.1	8.5	9.0

주: 1) 2030년 이후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는 2029년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.24%에서 21.24%로 2%p 인상하는 경우, 중앙정부의 수입은 2027년 7.2조원, 2031년 9.0조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0.4조원(연평균 8.1조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단,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중앙정부의 수입이 감소한 만큼 지방정부의 이전 수입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 재정수입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중앙정부 기준, 2027~2031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(안 제4조)	-7.2	-7.6	-8.1	-8.5	-9.0	-40.4	-8.1

주: 단,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중앙정부의 수입감소분만큼 지방정부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 전체 재정수입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